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사회단체들의 활동

1)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2001.11 청원자 서준식, 소개의원 김홍신)

- 청원소개 의견서
- 청원서
 - ① 청원제목: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 ② 취지
 - ③ 내용: 국회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 ④ 별첨: 성명서 - 국민기만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라(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자를 위한 공동투쟁)

2)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입법 반대 진정서

3) 국정원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사회단체 의견서

- 수신: 김대중 대통령, 국정원장

4) 국정원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 표명 손구서

- 별첨자료 1.경과보고 2. 성명서

5) 국정원 테러방지법에 대한 사회단체 성명서

- 민주노동당,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수신 : 의장

선결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재	총장
	번호			차장
	처리과	의안과		국장
담당자			공람	과장

제 목 :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
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원서 3부. 끝.

2001년 11월 28일

청원자(대표)

주소 :

(전화: [REDACTED])

성명 : 서준식 (인) 외 인(법인)

소개의원(대표) : 김홍신 (인) 외 인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236 아남아파트 201동 208호
	성명 : 서준식
건명	테러방지법(안) 입법반대에 관한 청원
소개년월일	2001년 11월 28일

소개의견 : 9.11미국테러참사 이후 세계는 테러방지대책을 세우기 위한 다각도의 방도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2년 월드컵과 각종 국제행사유치를 계획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여러 가지 방면에서 테러방지대책을 세우고 있고, 금번에 제출된 예정인 테러방지법(안) 또한 이런 맥락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되는 테러방지법(안)은 국민의 인권과 법질서를 침해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의 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회 각계의 반대의 목소리가 높은 현실입니다.

테러방지법은 전문 27개조와 부칙2개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많지 않은 분량의 법안이지만, 이 법안이 미치는 사회적·국민적 영향은 심대하리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과거 정권시절 정보기관과 군대, 경찰의 과도한 국민인권침해사례와 공안통치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으로선 이런 조치가 개혁적 시대조류와 민주주의 정착에 위배되는 시대역행적인 조치라는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법안의 내용을 보면 테러 및 테러단체에 대한 모호한 개념정의, 국정원 내 대테러센타 설치, 테러사태시 군병력을 지원 받아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권한행사를 하게 하는 등 현행법상의 입법의 한계와 정의를 넘어서는 각종 초법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또한 테러라는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비상입법임에도 헌법적 절차에 따른 비상사태선언도 없고, 그에 대한 통제방법도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고, 국가정보원과 같은 정보기관에 초법적 권한을 부여 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안)은 헌법정신에 기초한 정보기관의 민주주의적 통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시대역행적인 법안이라 판단됩니다.

때문에 이 법안의 논의과정은 보다 신중해야 하고, 대국민적 여론수렴의 과정과 합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법안이 우리 사회의 현실조건에 부합하는지, 혹여 국민의 인권과 권리의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는 없는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과 정부는 인류애에 반하는 비인륜적 테러행위에는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서가 곧바로 특정 정보기관에게 현행 법질서를 초월한 특권의 부여를 용인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이런 점을 고려하시어 법안의 심사과정에서 청원의 내용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개의원 김홍신인

청원서

1. 청원제목: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에 관한 청원

2. 취지:

국회에 2001년 11월 일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다음 내용과 같이 국민의 인권보장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 강화할 위험성이 다분하다. 또한 시민사회의 의견수렴절차와 국가인권위원회와의 논의 등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했으므로 폐기되고 재론돼야 한다. 이에 청원인 대표 서준식 외 68개 인권사회단체는 본 법안의 입법반대를 청원한다.

3. 내용: 국회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

① 테러 개념의 모호성 - 제 2조(정의)

2001년 11월 12일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후 두차례에 걸쳐 법안이 수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테러의 개념도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제2조 1호 가항에서 국가요인 및 그 가족 등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다. 테러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형법 및 특별형법으로 포괄되지 않는 죄목을 지금까지의 테러유형에 비추어 정확히 따져보고, 그에 한하여 죄목을 만드는 식의 입법이 되어야 한다. 죄목을 마구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국민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법치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테러개념 중 ‘사회적 목적’이 삭제되었으나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두 번에 걸친 법안 수정에서도 테러 개념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은 테러 개념을 정확히 정의해내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즉, 테러방지법안을 추진하는 주체들도 ‘테러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조차 어려운 개념에 따라 법을 집행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수사기관의 재량이 확대될 것이고, 국민들의 정치적 저항 중 상당부분이 테러로 분류될 소지가 다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행위는 대테러센터의 수사대상이 된다. 인터넷 중앙일보 11월 24일자 기사에 보면 인도의 경우 테러법을 내세워 지난 10년간 7만 5천명을 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1%도 안된다고 한다. 즉, ‘일단 테러라 해서 전부 다 잡아가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집회·시위권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상당정도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현행 형법 및 특별형법 중 테러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죄목’을 차근차근 점검해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율하는 식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성급하게 법안을 만들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안 ‘제2조 12호의 마항(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 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 같은 조항은 납득될 수 있지만,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는 식의 불확정한 개념을 써서는 안된다.

② 국정원의 수사권 확대 - 제1조(목적), 제5조(대테러센터), 제16조(사법경찰권), 부칙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최초법안에서는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활동에 “테러사건의 수사”를 명기하고 여기에 ‘주’를

달아 “국정원의 수사권에 한가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명히 밝혔었다. ‘명시적’인 이 부분은 수정 법안에서 사라졌다. 그렇다고 국정원의 수사권이 사라진 것이 아니다.

수정된 법안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이 관장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 17조에서 22조에 이르는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이다. 또한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는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고 부칙 제2조1항에 따르면 ‘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테러센터장을 수사기관으로 보고 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하는 – 또한 그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 기관이 수사를 맡게 되는데 그것이 국정원의 수사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형식상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한다 할지라도 국정원의 수사권 문제가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정원 요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일반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안기부 전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공소장만을 대서해온 기능에 안존하여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야기될 문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은 수사권을 갖지 않는다’라는 분명한 규정이 들어가지 않는 한 국정원이 테러사건 수사에 주도권을 훨씬 상황을 막을 수 없다.

국정원의 수사라는 본질적인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의 법안 추진은 안된다. 국정원은 ‘정보수집활동’에만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 국정원이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 그중에서도 국내정치개입에 남용될 여지가 없는 국외정보수집분석기관으로 국한시키자는 것이 국민의 오랜 요구사항이었고 국가 이익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다. 현 정부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개명한 이유도 그런 것이었다. 국정원이 지금 갖고 있는 보안수사권을 축소해도 모자랄 마당에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민의 활동을 감시, 포착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 밖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적 제한과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지금도 온갖 비리와 공작, 인권침해 시비에 국정원이 연루되어 거론되고 있다. 그런 국정원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하는 일이다.

③ 테러단체 규정의 문제 - 제2조 2항

목적을 따지지 않고 구성원이 특정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하면 모두 테러단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였다. 테러의 정의에서 이미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의 계획적인 행위를 테러라 한다고 했으므로 목적이 어떻든 ‘테러행위’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단체는 모두 테러단체에 해당하게 된다.

이러한 테러단체의 정의에 따르면 단체 자체의 성격으로는 테러단체임을 식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구성원의 행동 여하에 따라서 테러단체임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단체라도 지속적으로 테러행위를 한 경우에는 테러단체가 되어 종교단체의 장은 테러단체를 구성한 수괴가 된다. 어떤 행위를 얼마나 ‘지속적’으로 해야 테러단체가 되는지,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테러행위가 되는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예를 들어 檀君像의 목을 자른 것으로 의심되는 종교단체를 ‘옹정’하기 위해 그 대표자들(각계 주요 인사에 해당)을 수차례 걸쳐 폭행하여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 사람들이 소속되어 있는 또 다른 종교단체도 테러단체가 될 수 있다. 다른 예로 green peace 같은 조직이 반핵 운동의 하나로 원자력발전소 시설의 일부를 점거하는 행위를 한다면 이 단체 또한 테러단체가 될 수 있다.

테러단체에는 국내외 결사가 모두 포함되는데 국외의 테러 결사체를 우리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다. 테러방지법의 대상이 될 테러단체를 전세계 테러단체로 확대한 것이 국가정보원 등의 수사권한 확대와 연결된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④ 특수부대 설치 문제 - 제7조(진압작전 및 인명구조조직의 설치)

무력진압을 위한 특수부대의 설치를 가능하게 하고 있는데 그 운영이나 훈련 등의 비공개는 수긍할 수 있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 조직의 기본적인 방식조차 특정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여기에 군이 포함될 것인지도 문제된다. 특수부대의 설치권자 중 국방부장관이 포함되어 있어 군병력이 포함될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이는데 이는 계엄 상황을 제외하고는 군의 출동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에 위반된다.

⑤ 군병력 출동 문제 - 제15조(군병력 등의 지원)

제3항에서 군병력에게 부여된 권한(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 방지 또는 범죄예방과 제지를 위한 조치)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내지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이다. 군은 민간인에 대해 경찰력을 행사하도록 훈련되거나 조직된 기구가 아니다. 이런 기구가 테러방지라는 명분으로 경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헌이다. 우리 헌법은 제한적이나마 군대가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 계엄을 예정하고 있을 뿐, 계엄이 선포되지 않는 한 군이 경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러한 명문헌법에 정면으로 충돌할 수 있는 입법을 9.11 사태에 편승해 얼렁뚱땅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군과 경찰의 경계를 허물게 될 테러방지법은 국가권력에 대한 민주주의적 통제를 더욱 더 어렵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식의 입법은 또한 우리의 일상을 늘상 비상사태로 인식하게 만들거나 만드는 효과를 낳을 수 있으며, '계엄선언 없는 계엄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군병력의 지원을 통해 무언가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꼭 있다고 한다면 통합방위법에서 정한 수준의 활동(통합방위법 제14조, 제15조는 각각 '통제구역설정'과 '대피명령'을 규정)으로 국한해야 할 것이다.

⑥ 테러대책 방안 - 제10조(국가중요행사의 대테러대책)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행사가 있을 시에는 행사특성에 맞는 분야별 대테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법규정이 없어도 대테러대책은 세울 수 있는 것이고, 현재에도 테러대책이 수립되고 있다. 2002년 월드컵을 대비하여 테러대책을 세운다는 것인데, 그 필요성을 굳이 인정해야 한다면限時적으로 테러대비특별대책기구를 세우는 방안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이 경우에도 경찰 등에게 부여되어 있는 경비 및 수사권한을 흐트리는 식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해 법치국가가 요구하는 국가기구 구성원리가 훼손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다. 경찰과 비밀정보기관(국가정보원), 군 간의 명확한 業務分掌이 테러대비를 이유로 파괴되어서는 안된다.

⑦ 외국인에 대한 대응 - 제11조(외국인의 출국조치)

소재지 및 국내 체류동향확인, 즉 외국인을 사찰할 수 있는 요건으로 "테러와 관련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로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의 입법례와 엄밀하게 비교 검토해봐야 한다. 한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외국인을 사찰하면, 곧 대한민국 국민도 외국에서 이런 식으로 사찰당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신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약 일본내 재일동포들의 지위가 이런 식으로 제한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대테러센터의 장 또는 경찰청장"은 외국인 사찰활동결과 "테러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이라고 해서 법치국가적 보장에서 제외하는 것은 문제이다. 문제가 있는 외국인이라도 출입국관리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출국시켜야 한다. 이러한 조항이 그대로 입법화된다면 대한민국에 체류중인 외국인(특히 비서방국가의 외국인)을 모두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하는 태도가 수사기관은 물론 국민들 사이에서도 급격히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⑧ 테러단체 구성죄 - 제19조(테러단체의 구성 등)

테러단체 구성죄는 성립하기가 어려우므로 그 처벌요건을 변경해야 한다.

첫째, 수괴는 테러행위의 최고지휘책임자 정도로,
둘째, 간부는 테러행위의 결정에 참여한 자 정도로 변경해야 할 것이다.

테러단체가입을 타인에게 권유, 선동하는 것을 처벌하는 점도 문제이다. 무엇을 권유와 선동이라 볼 것인가? 권유, 선동을 처벌하겠다는 것은 단체에 대한 일상적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권유와 선동에 대한 조사가 10개 있으면 그 중에서 실제로 기소에까지 이른 사건은 1개도 안 된다는 통계가 있다.

⑨ 불고지죄 - 제21조(테러범죄의 미신고)

최초 법안에서는 '불고지죄'였으나 '테러범죄신고불이행죄'로 바뀌면서 '테러의 실행저지가능성'이 삽입되었다. 또 한차례 수정을 통해 '테러범죄의 미신고'로 바뀌었다. 단어만 바뀌었을 뿐 성격은 마찬가지다. 기존 법안에서는 범죄의 실행을 저지할 수 있는지를 묻지 않고 불고지를 철판한다는 점에서 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크게 우려되었었다. 그러나, '실행저지가능성'을 포함시켰다 하더라도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원이 최초 법안에서 참고자료로 들고 있는 독일의 경우 '실행저지가능성'은 신고를 통하여 바로 테러를 예방할 수 있는 경우에 국한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실행저지가능성은 매우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어 거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⑩ 허위사실의 신고 또는 유포 - 제22조(허위신고 등)

'허위사실'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인정될지 의문이다. 예를 들어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했으나 신고를 받은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 본 결과 테러와 무관함이 밝혀진 경우 허위사실 신고라고 할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이 경우 허위사실 신고 등의 죄는 허위임을 알면서 이를 신고 또는 유포하는 등으로 엄격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⑪ 감청의 확대 - 부칙 제2조3항

유·무선 전화 등에 대한 법원의 감청 허가건수는 최근 계속 늘어나고 있다. 수십만의 사람들, 특히 대다수의 범죄혐의 없는 사람들이 감청의 대상이 되고, 수백만건의 사적인 대화가 감시되고 있다. 차·발신 전화번호 추적이 법원의 허가 없이 무제한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등등 감청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은 여러 차례 논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청대상범죄의 수는 점차 늘어나고 있다. 현재 감청이 가능한 범죄는 150개가 넘는데, 다시 테러방지법은 다시 여기에 수 개의 범죄를 추가하고 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은 감청대상의 범죄도 넓게 설정할 뿐 아니라, 감청에 대한 통제에서도 문제가 있다. "법관은 검사의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청을 허가할 수 있다"(동법 제6조 5항)고만 되어 있는데, 자신의 고유한 조사권한이 없는 법원으로서는 감청신청의 적정성을 심사할 방도가 없다. 한편 미국에서는 감청에 대해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등 이른바 법관에 의한 사후통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그러한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감청으로 인한 인권침해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실에서 '테러방지에 규정된 죄'를 새로이 감청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인권침해 논란은 더욱 증폭될 것이다.

⑫ 절차적 민주주의의 문제

국정원이 2001년 11월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불과 10일간의 예고기간만을 두었다.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에 아무런 공지 없이 법안 내용을 수정하였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는 전혀 없었다. 이런 절차적 문제점이 있음에도 차관회의, 당정협의, 국무의회의결이 불과 이를만에 이루어졌다.

지난 4월 30일 국회에서 통과된 '국가인권위원회법안'에 따르면 인권위원회의 업무사항(제19조 1항)에는 '인권에 관한 법령(입법과정중에 있는 법령안을 포함한다)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 있다. 또한 관계국가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20조 1항).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6일 출범했으므로 이런 중대한 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고 본다.

요약컨대,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꼭 필요하다면 기존의 형법과 특별형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논의해야 하고, 국정원은 '정보수집활동'에만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테러대책 논의의 기본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 바탕 위에서 대테러대책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로도 충분히 중앙집권화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테러대책회의 같은 것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테러센터가 없더라도 문제없이 테러에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테러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점검과 관계기관의 안전관리대책 수립, 그리고 기존의 테러방지기구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 테러대응기구가 장비와 시설 면에서 부족하여 임무수행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예산 및 장비지원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면 할 것이다. 이런 점검을 마친 후에도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국민에게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졸속추진은 결코 안된다. 테러방지법제가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4. 별첨: 성명서

국미기마 주다하고 테러방지법안 철회하라

대테러 업무 장악과 수사권 확대를 노리는 국정원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기만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하며, 테러대책을 틈타 '음지의 권력'으로 부활하려는 야욕에 불이 붙었다.

지켜보기조차 숨찬 입법과정을 보자. 국정원은 지난 12일에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불과 10일만 두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차관회의에서 가결되었고 당정협의도 마쳤다.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되었다.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이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란 예상이 어렵지 않다. 각종 민생법안은 꽉꽉 막혀 있는데, 유독 이 법만은 쾌속질주하고 있다. 국정원이 비상하기 위한 날개가 착착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즉각적인 인권사회단체의 반발과 반격에 부딪쳤다. 국정원의 테러업무 주도권 장악을 본질로 하여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 인권침해 조항으로 도배된 법안이 상식적인 사회의 납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국정원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법안을 바꿔치기 했다. 명시적인 국정원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인권침해 조항을 일부 수정·삭제했다. 그러나, 이는 인권사회단체의 반발을 수용했다기보다는 테러방지 법안의 '본질'을 감추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국정원의 야심을 드러낸 것뿐이다.

그 증거는 확연하다. 최초법안에서는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활동에 "테러사건의 수사"를 명기하고 '주'를 달아 "국정원의 수사권에 한가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거센 반발에 접하자 이 부분은 법안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했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있다. 이들이 관장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 17조에서 22조에 이르는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이다. 또한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는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말은 국정원의 수사권이 확대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은 법안의 걸을 손질하여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도저히 감춰질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은 22일 차관회의와 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또 한번 수정되었다. 몇몇 언론은 이를 두고 '국정원은 독자적인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수사권은 엄연히 살아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하는 -또한 그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관이 수사를 맡는데 그것이 국정원의 수사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강변을 어찌 믿으란 말인가? 형식상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하게끔 법안을 손질했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정원 요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안기부 전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공소장만을 대서해온 기능에 안존하여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야기될 문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안기부를 거치면서 줄곧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닌 '음지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근본이유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선 이례적으로 국내 정보수집권에 보안수사권까지 함께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 권리를 남용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국가중요정책결정의 방향제시라는 본래의 목적을 떠나 국내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각종 불법을 자행하였고, 특히 그 수사권을 남용하여 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 불법체포·감금·고문 등의 인권 유린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에 구 안기부의 수사권을 분리하려던 시도는 여러 차례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등 일부조항에 대한 수사권만 삭제한 것이 고작이었고, 96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를 통해 완전히 부활된 대공수사권이 안기부에게 되돌아갔다.

이런 역사가 있기에 국정원의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 그중에서도 국내정치개입에 남용될 여지가 없는 국외정보수집분석기관으로 국한시키자는 것이 국민의 오랜 요구사항이었고, 현 정부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개명한 이유였다. 국정원이 지금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축소해도 모자랄 마당에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민의 활동을 감시, 포착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에 대한 위해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 밖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적 제한과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지금도 고삐가 풀려서 온갖 비리와 공작, 인권침해 시비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이 아니던가? 그런 국정원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과 정치권은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라.

2001년 11월 27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광주 NCC/노들 장애인 야학/다산인권센터/대자보/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위례시민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희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이상 68개 단체)

진정서

1. 이름: 선용진
2. 주민등록번호: [REDACTED]
3. 주소: [REDACTED]
4. 이메일: [REDACTED]
5. 전화: [REDACTED]
6. 진정 제목: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입법 반대 진정
7. 진정 내용:

저는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 법안을 심의하실 의원들께서는 이점을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9. 11. 테러이후 각국은 이른바 테러라는 실체 없는 적과 싸우고 있다. 9. 11 테러의 당사국인 미국에서는 테러 직후인 9월 13일 '2001년 반테러법'(Combating Terrorism Act of 2001)이 두 명의 공화당 의원과 한 명의 민주당 의원에 제안되어 당일 의결된 이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법적 무기들을 하나하나 정비해가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영국과 독일이 테러방지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밖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뉴욕테러가 전세계인에게 던지고 있는 교훈을 찬찬히 새겨볼 틈도 없이 각국 정부는 '눈에는 눈'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외국인 및 정치적 소수그룹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과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는 테러방지라는 명분아래 국내의 정치집단들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차차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세계적 공안정국'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본 진정인은 우려를 금치 못한다. 두 번의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이후의 오랜 민권운동을 통해 확인하고 확보한 인권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위기가 전세계에 몰아닥치고 있다. 각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각국 정부가 찾아내려고 하는 숨어있는 테러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전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감시국가, 경찰국가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우리 정부도 테러방지대책과 테러방지법안을 내놓았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1월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라는 명분아래 국가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공안국가적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비판받은 이 법안은 이후 두 번에 걸친 수정을 거쳐 그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으나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불순한 동기와 의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형법 및 특별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까지의 '테러관행'에 비추어 정확히 따져보고, 그러한 행위에 한하여 죄목을 만드는 식으로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죄목을 마구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국민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을 자유주의적 법치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 인도에서는 이른바 '테러분열법'을 내세워 과거 10년간 7만5천명의 테러용 의자를 체포했다. 그런데 체포한 테러용의자 가운데 1%도 채 안되는 사람들만이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치적 소수자들의 위법행위 혹은 그에 미치지 않는 가벼운 범법행위도 테러행위로 체포되고 수사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던가. 한국에서도 이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우려한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대테러센터공무원(국정원직원)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분자로 몰려 체포되고 수사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집회, 시위권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대단히 위축될 것이다. 이런 일이 뻔히 예측되는데도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하려는 국정원의 의도는 무엇인가? 본 진정

이은 우리 정부와 이 법안을 심의할 국회가 이 부분에 대해 당당히 밝히기를 요구한다.

국회와 정부는 현행 형법 및 특별형법 중 테러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죄목'을 차근차근 점검해보고, 그 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율하는 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하라는 시민인권운동단체들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아니 그 이전에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테러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반론에 귀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월드컵을 앞두고 시간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인권운동세력이 책임질거냐 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몰아 부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입안한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을 가져다줄 것인가 아니면 테러방지라는 명분아래 국민의 자유를 한층 더 제한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는 정부에게 있다. 다시 말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 입증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본 진정인은 정부와 국회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그리고 바로 그 답변 위에서 차근차근 테러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요청한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광주 NCC/노들장애인아학/다산인권센터/대자보/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전국민중연대(준) -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지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위례시민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이상 68개 단체)

수 신 김대중 대통령

참 조 정책기획수석실

발 신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담당 : 인권운동사랑방 류은숙 사무국장
741-5363, F 741-5364, humanrights@sarangbang.or.kr)

제 목 국정원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사회단체 의견서

날 짜 2001년 11월 27일 (표지포함 총 4쪽)

김대중 대통령께

우리는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합니다. 지난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2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뤄졌지만 이 법안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정된 부분은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유치·조사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의 삭제, 그리고 테러의 개념과 대테러센터의 수사권에 대한 규정의 부분적 수정 등입니다. 다음과 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정원의 테러수사권은 여전히 문제이다.

최초법안에서는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활동에 "테러사건의 수사"를 명기하고 여기에 '주'를 달아 "국정원의 수사권에 한가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명히 밝혔었다. '명시적'인 이 부분은 수정 법안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테러 범죄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이 관장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 17조에서 22조에 이르는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이다. 또한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는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하는

- 또한 그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 기관이 수사를 맡게 되는데 그것이 국정원의 수사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형식상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하게끔 법안을 손질했다고 해서 국정원의 수사권 문제가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정원 요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안기부 전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공소장만을 대서해온 기능에 안존하여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야기될 문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국정원이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반대했고 국정원의 수사라는 본질적인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의 법안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 국정원은 ‘정보수집활동’에만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

2. 테러 개념의 모호성은 여전하다.

테러의 개념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제2조 1호 가항에서 국가요인 및 그 가족 등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다. 테러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형법 및 특별형법으로 포괄되지 않는 죄목을 지금까지의 테러유형에 비추어 정확히 따져보고, 그에 한하여 죄목을 만드는 식의 입법이 되야 하지 않는가? 죄목을 마구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국민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법치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테러개념 중 ‘사회적 목적’이 삭제되었으나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두 번에 걸친 법안 수정에서도 테러 개념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은 테러 개념을 정확히 정의해내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즉, 테러방지법안을 추진하는 세력들도 ‘테러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조차 어려운 개념에 따라 법을 집행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수사기관이 재량이 확대될 것이고, 국민들의 정치적 저항 중 상당부분이 테러로 분류될 소지가 다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행위는 대테러센터의 수사대상이 된다. 인터넷 중앙일보 11월 24일자 기사에 보면 인도의 경우 테러법을 내세워 지난 10년간 7만 5천명을 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1%도 안된다고 한다. 즉, 일단 테러라 해서 전부 다 잡아가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집회·시위권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상당정도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현행 형법 및 특별형법 중 테러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죄목’을 차근 차근 점검해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율하는 식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성급하게 법안을 만들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안 ‘제2조 12호의 마항(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 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같은 조항은 납득될 수 있지만,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는 식의 불확정한 개념을 써서는 안된다.

3. 요약하자면,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꼭 필요하다면 기존의 형법과 특별형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논의해야 하고, 국정원은 ‘정보수집활동’에만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테러대책 논의의 기본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 바탕 위에서 대테러대책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어쨌건 우리는 현재로도 충분히 중앙집권화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테러대책회의 같은 것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테러센터가 없더라도 문제없이 테러

에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테러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점검과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 그리고 기존의 테러방지기구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 테러대응기구가 장비와 시설 면에서 부족하여 임무수행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예산 및 장비지원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면 할 것이다. 이런 점검을 마친 후에도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국민을 납득시켜라. 현재와 같은 졸속추진은 결코 안된다. 테러방지법제가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붙임: 성명

국민기만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 철회하라

대테러 업무 장악과 수사권 확대를 노리는 국정원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기만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하며, 테러대책을 틈타 ‘음지의 권력’으로 부활하려는 야욕에 불이 붙었다.

지켜보기조차 숨찬 입법과정을 보자. 국정원은 지난 12일에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입법예고기간을 불과 10일만 두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차관회의에서 가결되었고 당정협의도 마쳤다. 27일 국무회의에서도 의결 되었다.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이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란 예상이 어렵지 않다. 각종 민생법안은 꽉꽉 막혀 있는데, 유독 이 법만은 쾌속질주하고 있다. 국정원이 비상하기 위한 날개가 착착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즉각적인 인권사회단체의 반발과 반격에 부딪쳤다. 국정원의 테러업무 주도권 장악을 본질로 하여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 인권침해 조항으로 도배된 법안이 상식적인 사회의 납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국정원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법안을 바꿔치기 했다. 명시적인 국정원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인권침해 조항을 일부 수정·삭제했다. 그러나, 이는 인권사회단체의 반발을 수용했다기보다는 테러방지법안의 ‘본질’을 감추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국정원의 야심을 드러낸 것뿐이다.

그 증거는 확연하다. 최초법안에서는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활동에 “테러사건의 수사”를 명기하고 ‘주’를 달아 “국정원의 수사권에 한가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거센 반발에 접하자 이 부분은 법안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했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있다. 이들이 관장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 17조에서 22조에 이르는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이다. 또한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는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말은 국정원의 수사권이 확대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은 법안의 곁을 손질하여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도저히 감춰질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은 23일 차관회의와 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또 한번 수정되었다. 몇몇 언론은 이를 두고 ‘국정원은 독자적인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수사권은 엄연히 살

아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하는 -또한 그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관이 수사를 맡는데 그것이 국정원의 수사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강변을 어찌 믿으란 말인가? 형식상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하게끔 법안을 손질했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정원 요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안기부 전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공소장만을 대서해온 기능에 안존하여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야기될 문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안기부를 거치면서 줄곧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닌 '음지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근본이유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선 이례적으로 국내 정보수집권에 보안수사권까지 함께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 권리를 남용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국가중요정책결정의 방향제시라는 본래의 목적을 떠나 국내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각종 불법을 자행하였고, 특히 그 수사권을 남용하여-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불법체포·감금·고문 등의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에 구 안기부의 수사권을 분리하려던 시도는 여러 차례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등 일부조항에 대한 수사권만 삭제한 것이 고작이었고, 96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를 통해 완전히 부활된 대공수사권이 안기부에게 되돌아갔다.

이런 역사가 있기에 국정원의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 그중에서도 국내정치개입에 남용될 여지가 없는 국외정보수집분석기관으로 국한시키자는 것이 국민의 오랜 요구사항이었고, 현 정부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개명한 이유였다. 국정원이 지금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축소해도 모자랄 마당에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민의 활동을 감시, 포착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에 대한 위배가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 밖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적 제한과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지금도 고삐가 풀려서 온갖 비리와 공작, 인권침해 시비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이 아니던가? 그런 국정원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과 정치권은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라.

2001년 11월 27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수신: 국정원장

발신: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제목: 국정원장에게 보내는 제 사회단체 항의서한

일시; 2001년 11월 27일

국정원은 국민기만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 철회하라

대테러 업무 장악과 수사권 확대를 노리는 국정원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기만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하며, 테러대책을 틈타 '음지의 권력'으로 부활하려는 야욕에 불이 붙었다.

지켜보기조차 숨찬 입법과정을 보자. 국정원은 지난 12일에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입법예고기간을 불과 10일만 두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차관회의에서 가결되었고 당정협의도 마쳤다. 27일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이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란 예상이 어렵지 않다. 각종 민생법안은 꽉꽉 막혀 있는데, 유독 이 법안은 쾌속질주하고 있다. 국정원이 비상하기 위한 날개가 착착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즉각적인 인권사회단체의 반발과 반격에 부딪쳤다. 국정원의 테러업무 주도권 장악을 본질로 하여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 인권침해 조항으로 도배된 법안이 상식적인 사회의 납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국정원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법안을 바꿔치기 했다. 명시적인 국정원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인권침해 조항을 일부 수정·삭제했다. 그러나, 이는 인권사회단체의 반발을 수용했다기보다는 '테러방지법안의 '본질''을 감추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국정원의 야심을 드러낸 것뿐이다.

그 증거는 확연하다. 최초법안에서는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활동에 "테러사건의 수사"를 명기하고 '주'를 달아 "국정원의 수사권에 한가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거센 반발에 접하자 이 부분은 법안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했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있다. 이들이 관장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 17조에서 22조에 이르는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이다. 또한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는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말은 국정원의 수사권이 확대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은 법안의 곁을 손질하여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도저히 감춰질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은 23일 차관회의와 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또 한번 수정되었다. 몇몇 언론은 이를 두고 '국정원은 독자적인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수사권은 엄연히 살아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하는 -또한 그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관이 수사를 맡는데 그것이 국정원의 수사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강변을 어찌 믿으란 말인가? 형식상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하게끔 법안을 손질했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정원 요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안기부 전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공소장만을 대서해온 기능에 안존하여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야기될 문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안기부를 거치면서 줄곧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닌 '음지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근본이유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선 이례적으로 국내 정보수집권에 보안수사권까지 함께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 권리를 남용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국가중요정책결정의 방향제시라는 본래의 목적을 떠나 국내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각종 불법을 자행하였고, 특히 그 수사권을 남용하여 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 불법체포·감금·고문 등의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에 구 안기부의 수사권을 분리하려던 시도는 여러 차례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등 일부조항에 대한 수사권만 삭제한 것이 고작이었고, 96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를 통해 완전히 부활된 대공수사권이 안기부에게 되돌아갔다.

이런 역사가 있기에 국정원의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 그중에서도 국내정치개입에 남용될 여지가 없는 국외정보수집분석기관으로 국한시키자는 것이 국민의 오랜 요망사항이었고, 현 정부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개명한 이유였다. 국정원이 지금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축소해도 모자랄 마당에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민의 활동을 감시, 포착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 밖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적 제한과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지금도 고삐가 풀려서 온갖 비리와 공작, 인권침해 시비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이 아니던가? 그런 국정원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은 국민 기만을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라.

2001년 11월 27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광주 NCC/노들 장애인 야학/다산인권센터/대자보/민족자주·민주주의·민중생존권생취 전국민중연대(준) - 기독시민사회연대, 노동인권회관, 노동자의 힘,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문화개혁시민연대, 민족정기수호협의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민주노동당,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범민련 남측본부, 사회당, 사회진보연대, 영등포산업선교회, 예장민중교회 선교연합,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전국노동단체연합,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빈민연합,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준),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회협의회, 전태일기념사업회, 진보교육연구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환경센터, 통일광장, 보건복지민중연대(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청년단체협의회/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불교인권위원회/새사회연대/위례시민연대/인권과 평화를 위한 국제민주연대/인권실천시민연대/인권운동사랑방/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자유·평등·연대를 위한 광주인권운동센터/장애인의 꿈너머/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 군폭력 회생자 유가족 협의회/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준)/전북 평화와 인권연대/정신개혁시민협의회/참여연대/천주교 청주교구 정의평화위원회/천주교인권위원회/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평화인권연대/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모임 '친구사이'/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이상 68개 단체)

국정원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국회의원 의견 표명 촉구서

1. 안녕하십니까?
2. 지난 11월 12일 국가정보원에서는 테러방지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국정원은 “내년 5월 월드컵을 대비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한다”며 입법예고기간을 불과 10일간 (통상 20일 이상임)만 두었고, 입법예고 기간 내에 공지 없이 법안 내용을 바꿔치기하는 변칙을 서슴치 않았습니다. 국정원은 법안제정을 위한 기본 절차인 각계의견 수렴 없이 12월 8일 정기 국회까지 통과를 밀어 부칠 것이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의 수사권과 권한의 강화가 인권 침해를 부를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인권시민단체들은 이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3. 이 법안의 핵심은 국정원의 권한의 대폭 확대·강화에 있습니다. 우리 인권시민단체들은 국정원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을 전면 거부하는데 뜻을 모았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충분히 중앙집권화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경찰의 정보력은 지나치리만큼 강하며 군대와 다름없는 전투경찰대와 대테러특수부대들이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특별한 법을 만들 까닭은 없으며 정보기관인 국정원이 나서서 대테러조직을 장악하고 일괄 지휘해야 할 까닭도 없습니다. 국민의 감시밖에 있는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권한이 집중될 때 민주주의에 끼치는 위협은 테러만큼 심각합니다.
4. 이에 우리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의원님의 입장을 지난 23일에 보낸 공문에 이어 재차 묻고자 합니다. 국정원이 추진하는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원님의 의견을 밝혀주십시오.

- 별첨자료 1. 경과보고
2. 성명

■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1. 성명:

2. 소속정당:

3.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입장:

찬성한다 ()

반대한다()

■ 답변서 보낼 곳:

팩스: 02-741-5364 이메일: humanrights@sarangbang.or.kr

■ 의견서는 11월 28일(수) 오후 6시까지 보내주십시오. 답변 결과는 전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의원께서 이 법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 불임 1: 경과 보고 및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문제점 요약

2001년

- 9월 25일;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테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토록 지시
- 10월 25일; 당정회의, 테러방지법 제정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개정키로
- 11월 5일; 테러관계차관회의, 대테러센터를 국가안전보장회의 산하에 설치기로
- 11월 6일; 국무회의, 대테러작전 일원화와 관련하여 국정원에 '종합통제권'을 부여키로
- 11월 12일; 국정원장이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을 맡고, 대테러센터도 국정원에 설치하는 내용의 입법예고
- 11월 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국회상정 저지를 위한 긴급토론회'를 갖고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 철회 요구, 제 인권·사회 단체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결의
- 11월 21일; 입법예고 마지막날, 국정원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된 '테러방지법안'이 공지도 없이 수정된 것으로 밝혀져. 입법예고 기간 중에 공지도 없이 법안을 수정하는 무리수를 둔 것은 국정원이 12월 8일까지의 국회 회기 내에 이 법안을 기어코 통과시키겠다는 저의를 전면에 드러낸 것. 20일 인권·사회단체 긴급토론회에서 집중 비판된 국정원의 수사권,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의 조항이 수정 또는 삭제됨. 그러나 국정원이 대테러활동을 장악한다는 본질에는 변함이 없으며, 명시적인 국정원의 수사권 규정을 삭제한 대신 법안 곳곳에 분산시켜 수사권을 내포. 이는 국정원이 공안권력의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로 인권침해 시비를 축소시키는 전술을 짠 것으로 보임.
- 11월 22일; 68개 인권·사회 단체가 연명한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정원 테러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의견서' 발송/국가인권위 전원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에 적극대응' 하기로 의견을 모음. 차관회의 가결 안됨
- 11월 23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사회단체 대표자 기자회견
국회의원 전원에게 '입장표명 촉구서한' 전달
- 11월 24일; 청와대에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전달
- 11월 26일; 법안 일부 수정하여 차관회의 가결 및 당정협의 확정
- 11월 27일: 국정원 앞 항의시위/국무회의 통과

우리는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을 반대한다. 지난 12일 국정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 예고한 이후 2차례에 걸쳐 수정이 이뤄졌지만 이 법안의 본질에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수정된 부분은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유치·조사 등 대표적인 인권침해 조항의 삭제, 그리고 테러의 개념과 대테러센터의 수사권에 대한 규정의 부분적 수정 등이다.

1. 국정원의 테러수사권은 여전히 문제이다.

최초법안에서는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활동에 "테러사건의 수사"를 명기하고 여기에 '주'를 달아 "국정원의 수사권에 한가지를 추가하는 것"으로 국정원의 수사권을 분명히 밝혔었다. '명시적'인 이 부분은 수정 법안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테러

범죄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하고 있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들이 관장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 17조에서 22조에 이르는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이다. 또한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는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하는 – 또한 그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 기관이 수사를 맡게 되는데 그것이 국정원의 수사가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 형식상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하게끔 법안을 손질했다고 해서 국정원의 수사권 문제가 사라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정원 요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안기부 전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공소장만을 대서해온 기능에 안존하여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야기될 문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처음부터 국정원이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 자체에 반대했고 국정원의 수사는 본질적인 위험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의 법안 추진에 절대 반대한다. 국정원은 ‘정보수집활동’에만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

2. 테러 개념의 모호성은 여전하다.

테러의 개념이 부분적으로 수정되었고, 제2조 1호 가항에서 국가요인 및 그 가족 등의 범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이라는 요건을 추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모호하다. 테러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형법 및 특별형법으로 포괄되지 않는 죄목을 지금까지의 테러유형에 비추어 정확히 따져보고, 그에 한하여 죄목을 만드는 식의 입법이 되야 하지 않는가? 죄목을 마구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국민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자유주의적 법치국가가 할 일이 아니다. 테러개념 중 ‘사회적 목적’이 삭제되었으나 그것이 본질적인 차이를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두 번에 걸친 법안 수정에서도 테러 개념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 말은 테러 개념을 정확히 정의해내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즉, 테러방지법안을 추진하는 세력들도 ‘테러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의조차 어려운 개념에 따라 법을 집행했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수사기관이 재량이 확대될 것이고, 국민들의 정치적 저항 중 상당부분이 테러로 분류될 소지가 다분할 것이다. 그리고 이들 행위는 대테러센터의 수사대상이 된다. 인터넷 중앙일보 11월 24일자 기사에 보면 인도의 경우 테러법을 내세워 지난 10년간 7만 5천명을 체포했으나 이 가운데 정식으로 기소된 사람은 1%도 안된다고 한다. 즉, 일단 테러라 해서 전부 다 잡아가 수사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렇게 되면 집회·시위권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은 상당정도 위축될 수 있다.

이런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현행 형법 및 특별형법 중 테러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죄목’을 차근차근 점검해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율하는 식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지금처럼 성급하게 법안을 만들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테러방지법안 ‘제2조 12호의 마항(대량으로 사람과 동물을 살상하기 위한 유해성 생화학 물질 또는 방사능물질의 누출·살포 또는 이를 이용한 위협)’같은 조항은 납득될 수 있지만,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국가안보 또는 외교관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대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라는 식의 불확정한 개념을 써서는 안된다.

3. 요약하자면, 테러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꼭 필요하다면 기존의 형법과 특별형법으로 포괄할 수 없는 부분을 정확히 논의해야 하고, 국정원은 ‘정보수집활동’에만 자신의 역할을 한정해야 한다는 것이 테러대책 논의의 기본 입장이 되어야 한다. 이 바탕 위에서 대테러대책에

필요한 부분을 논의해야 한다.

어쨌건 우리는 현재로도 충분히 중앙집권화된 경찰력과 테러대응기구들을 보유하고 있다. 대테러대책회의 같은 것이 구성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테러센터가 없더라도 문제없이 테러에 대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테러방지를 위한 시설 및 장비의 점검과 관계기관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 그리고 기존의 테러방지기구들의 역할을 분명하게 하는 일부터 추진해야 한다. 테러대응기구가 장비와 시설 면에서 부족하여 임무수행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는 예산 및 장비지원을 법의 테두리 내에서 하면 할 것이다. 이런 점검을 마친 후에도 입법이 필요한 것인지 국민을 납득시켜라. 현재와 같은 졸속추진은 결코 안된다. 테러방지법제가 국민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 붙임 2: 성명

국정원은 국민기만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안 철회하라

대테러 업무 장악과 수사권 확대를 노리는 국정원의 음모가 진행되고 있다. 국정원의 국민에 대한 기만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치밀하며, 테러대책을 틈타 '음지의 권력'으로 부활하려는 야욕에 불이 붙었다.

지켜보기조차 숨찬 입법과정을 보자. 국정원은 지난 12일에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입법예고기간을 불과 10일만 두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자마자 차관회의에서 가결되었고 당정협의도 마쳤다. 27일 국무회의 의결과 국회상정을 앞두고 있으나 이 또한 일사천리로 진행되리란 예상이 어렵지 않다. 각종 민생법안은 꽉꽉 막혀 있는데, 유독 이 법만은 쾌속질주하고 있다. 국정원이 비상하기 위한 날개가 착착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12일 국정원이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즉각적인 인권사회단체의 반발과 반격에 부딪쳤다. 국정원의 테러업무 주도권 장악을 본질로 하여 불고지죄,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등 인권침해 조항으로 도배된 법안이 상식적인 사회의 납득을 얻을 수 없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국정원은 입법예고 기간 내에 아무런 공지도 없이 법안을 바꿔치기 했다. 명시적인 국정원의 수사권 조항을 삭제하고 다른 인권침해 조항을 일부 수정·삭제했다. 그러나, 이는 인권사회단체의 반발을 수용했다기보다는 테러방지법안의 '본질'을 감추고 무슨 일이 있더라도 법안을 연내 통과시키고야 말겠다는 국정원의 야심을 드러낸 것뿐이다.

그 증거는 확연하다. 최초법안에서는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활동에 "테러사건의 수사"를 명기하고 '주'를 달아 "국정원의 수사권에 한가지를 추가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 거센 반발에 접하자 이 부분은 법안에서 사라졌다. 그러나 수정된 법안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임을 분명히 했고, 국정원에 설치되는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주고 있다. 이들이 관장하는 것이 테러방지법안 17조에서 22조에 이르는 테러범죄에 대한 수사이다. 또한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정하는 권한이 '국정원장'에게 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말은 국정원의 수사권이 확대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국정원은

법안의 곁을 손질하여 본질을 감추려 하고 있으나, 그 본질은 도저히 감춰질 수 없는 것이다.

국정원의 테러방지법안은 23일 차관회의와 26일 차관회의 의결을 거치면서 또 한번 수정되었다. 몇몇 언론은 이를 두고 '국정원은 독자적인 테러사건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던 일부 조항을 삭제 또는 수정'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국정원의 수사권은 엄연히 살아있다. 국정원장이 조직하는 -또한 그 '조직 및 정원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기관이 수사를 맡는데 그것이 국정원의 수사권이 아니라고 말하는 강변을 어찌 믿으란 말인가? 형식상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하게끔 법안을 손질했다고 사라질 문제가 아니다. 현실적으로 국정원 요원에 대한 검찰의 통제가 사법경찰관에 대한 통제와 같으리라 기대할 수 없고, 과거 안기부 전담 수사에 있어서 검찰은 거의 개입하지 못하고서 나중에 안기부 수사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공소장만을 대서해온 기능에 안존하여 온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테러센터의 공무원이 수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야기될 문제는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국정원이 지난 1961년 중앙정보부로 창설된 이래 안기부를 거치면서 줄곧 단순한 정보기관이 아닌 '음지의 권력기관'으로 부상할 수 있었던 근본이유는 국가정보기관으로선 이례적으로 국내 정보수집권에 보안수사권까지 함께 가졌기 때문이다. 또한 그 권리를 남용하여 국내외 정보의 수집·분석을 통한 국가중요정책 결정의 방향제시라는 본래의 목적을 떠나 국내정치에 개입함으로써 각종 불법을 자행하였고, 특히 그 수사권을 남용하여-그 조직과 활동의 비공개성과 결합하여- 불법체포·감금·고문 등의 인권유린행위를 자행하여 왔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에 구 안기부의 수사권을 분리하려던 시도는 여러 차례 수포로 돌아간 바 있다. 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보안법상 불고지죄 등 일부조항에 대한 수사권만 삭제한 것이 고작이었고, 96년 12월 26일 새벽 날치기를 통해 완전히 부활된 대공수사권이 안기부에게 되돌아갔다.

이런 역사가 있기에 국정원의 기능을 순수한 정보기관, 그중에서도 국내정치개입에 남용될 여지가 없는 국외정보수집분석기관으로 국한시키자는 것이 국민의 오랜 요구사항이었고, 현 정부가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개명한 이유였다. 국정원이 지금 갖고 있는 수사권한을 축소해도 모자랄 마당에 테러범죄에 대해 수사하는 것 자체가 시대에 역행하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국가의 정보기관이 국민의 활동을 감시, 포착하는 것 자체가 기본권에 대한 위협이 되며, 나아가 한 사회내의 민주적 의사형성이 가능하게 될 조건을 위협한다. 정보기관의 활동은 민주주의 원리의 내용인 투명성과 여론을 통한 국가활동에 대한 통제가능성 밖에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법적 제한과 특별한 통제장치를 필요로 한다. 지금도 고삐가 풀려서 온갖 비리와 공작, 인권침해 시비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이 아니던가? 그런 국정원의 권한과 업무를 확대하는 법안을 졸속으로 밀어붙인다면 역사와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국정원은 국민 기만을 종단하고 테러방지법안을 철회하라.

2001년 11월 27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

민주노동당



<보도자료>

2001년 11월 27일(화)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4 (두레빌딩9층)
- 전화 : 02)7611-333 전송 : 02)7614-115
- 대변인 : 이성현 (761-1333, 011-723-2013)
- 담당: 김종철(761-1333, 011-9076-8827)

성명

인권과 민주주의 후퇴, 테러방지법 제정 철회하라!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제정(안)이 국회상정에 임박해 있다. 통상 20일 이상을 두는 입법예고기간을 10일로 단축하여 법제정의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고 그 기간 내 법안 내용을 바꿔치기 하는 변칙을 서슴치 않더니 말 그대로 일사천리로 차관회의-당정협의- 국무회의의 통과를 거쳤다. 이런 상황이면 상임위 또한 무리없이 통과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의 국회상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민생현안들이 당리당략에 놀아나고 있는데 유독 테러방지법만 순항에 둑 단 듯 질주하고 있다.

졸속 추진이 부를 문제도 문제이거니와 더욱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테러방지법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확대한다는 데 있다. 최초법안에 명시되었던 수사권의 경우 수정되었다고 하지만 대테러센터의 조직을 국정원장이 정하는 것에서 보여 지듯 실상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데 한 겹 외피를 뒤집어 쓴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 뿐인가. 테러개념의 모호함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재량이 확대됨에 따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 표현 다수가 테러로 분류될 소지가 많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별도의 법이 없어도 기존의 수사권으로 충분히 테러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다. 오히려 기존의 수사권이 너무 방만하고 비대한 것이 문제라면 문제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테러방지법이 제정될 명분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며 테러방지법의 의도는 과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마구잡이로 유린했던 안기부의 부활을 꿈꾼다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우리 당은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테러방지법을 빌미로 한 국정원의 권력 부활 기도에 맞서 인권·사회단체와 연대해 투쟁할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끝>

2001년 11월 27일

민주노동당 인권위원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Association Of Physicians For Humanism

우 110-524 서울시 종로구 명륜동4가 188-4 동화빌딩 509호
☎ 02-766-6024 팩스 02-766-6025 Homepage : www.humanmed.org

서 며 서

초국가적 인권탄압법인 테러방지법 입법을 즉각 철회하라!

지난 시절, '국가 안보'라는 이름으로 국가기관이 자행한 인권 말살과 폭압 정치에 모든 국민들은 공포에 떨며 숨죽이고 살아야 했다. 최근 출범한 국가 인권위원회는 지난 시절의 바로 그 어두운 그림자를 지워내려는 온 국민들의 노력의 소산이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새로운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국정원이 '국가 안보'가 '테러 방지'로 이름만 바꿔 단 채 국민들의 인권과 자유로운 사생활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새로운 법안이 아무런 국민적 동의를 얻지도 않은 채 지금 국회를 통과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것이 오랜 진통과 방해 속에 이루어진 국가 인권위원회 출범을 무색하게 만들면서 국민의 인권과 민주 열망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정원이 어떤 기관인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온 국민의 숨통을 짓누르던 곳. 그곳이 바로 국정원이다. 안기부에서 국정원으로 기관의 명칭까지 바꾼 것을 우리는 국정원이 스스로 부끄러운 과거를 지워내려는 충정이라 이해하고, 지난 시절의 음산한 모습에서 환골탈태하여 국민을 위한 국가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왔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런 모습은 국민들의 비난을 피하기 위한 일시적 미봉책에 그친 사기극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은 미국 무역센터 테러를 계기로 테러에 대한 전 세계의 공포를 악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거도 불확실한 북한의 남침 위협을 평계로 온갖 전횡을 일삼던 과거의 행적과 하나 다를 바 없다. 억울하게 죽어간 사람을 간첩으로 몰아붙이며 명백한 살인자를 비호한 국정원의 과거 행태에 대해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이 사건은 '간첩'이라는 국정원 간부의 말 한마디에 경찰, 검찰, 언론 등 국가의 모든 기관의 기능이 마비되어 버렸던 시절, 국민 개개인의 인권이 얼마나 처참하게 짓밟힐 수 있었던가를 증명하는 사건이기도 하다. 테러방지법안은 '간첩'이라는 날말을 '테러'로 바꾸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 시대에 테러는 전쟁의 새로운 형태이기도 하며 이에 따라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정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은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 취지의 순수성과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대테러대책회의 상임위원장은 국정원장으로 하고 테러 사건의 수사를 국정원이 전담하게끔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이 테러 사건에 대해 수사를 전담하며 국가의 국방, 사법, 경찰의 업무까지 모두 국정원의 관할 하에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게다가 테러 방지라는 명분만 있으면 사찰활동, 구속기간 연장, 참고인 구인·유치, 무제한의 감청까지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지난 시절 국가권력 기관이 저지른 이런 형태의 인권 유린 사례에 대해 최근 사법부의 배상판결에 잇따르고 있

는 시점에서 국정원이 이런 법안을 제출한 것은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역사를 거꾸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국정원이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했던 많은 국민들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국가기관이 가진 힘은 분명 국민들이 위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국가기관이 남용하는 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고 주눅든 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국가기관에 많은 것을 양보해가며 국가 안보를 위하여 엄청난 혈세를 바쳐왔다.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이제 더 이상 국가가 국민의 회생을 강요할 수는 없다. 지금까지의 회생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어떤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더 이상 국정원은 국민의 인권을 위협할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 국정원은 지금까지의 권력만으로도 이미 지나치다.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국민의 권리를 위협할 대테러방지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국정원은 폭압적 권력을 확대할 기도를 즉각 중지하고, 국민의 인권 말살에 앞장섰던 자신의 과거부터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것이다. 국회 또한 만일 여기에 동조한다면, 이 역시 국민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2001. 11. 29

정부여당의 테러방지법 제정 기도를 비판한다

9. 11. 테러이후 각국은 이른바 테러라는 실체 없는 적과 싸우고 있다. 9. 11 테러의 당사국인 미국에서는 테러 직후인 9월 13일 '2001년 반테러법'(Combating Terrorism Act of 2001)이 두 명의 공화당 의원과 한 명의 민주당 의원에 제안되어 당일 의결된 이래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에 필요한 법적 무기들을 하나하나 정비해가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영국과 독일이 테러방지법을 강화하고 있으며, 그밖의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뉴욕테러가 전세계인에게 던지고 있는 교훈을 찬찬히 새겨볼 틈도 없이 각국 정부는 '눈에는 눈' 식의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외국인 및 정치적 소수그룹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스페인과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등에서는 테러방지라는 명분아래 국내의 정적집단들을 제거하려는 시도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른바 '세계적 공안 정국'이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우리는 전세계 시민인권운동단체와 함께 우려를 금치 못한다. 두 번의 세계대전의 경험을 통해, 그리고 이후의 오랜 민권운동을 통해 확인하고 확보한 인권과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 자유주의적 법치국가의 위기가 전세계에 몰아닥치고 있다. 각국에서 강화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각국 정부가 찾아내려고 하는 숨어있는 테러분자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결국 전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할 감시국가, 경찰국가를 강화시키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시류에 편승하여 우리 정부도 테러방지대책과 테러방지법안을 내놓았다. 국가정보원이 지난 11월 12일 입법예고한 테러방지법안은 테러방지라는 명분아래 국가권력을 강화시키려고 하는 공안국가적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제2의 국가보안법으로 비판받은 이 법안은 이후 두 번에 걸친 수정을 거쳐 그 내용이 다소 변경되었으나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국민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정보기관의 권한을 확대하겠다는 불순한 동기와 의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테러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면, 기존의 형법 및 특별형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행위를 지금까지의 '테러관행'에 비추어 정확히 따져보고, 그러한 행위에 한하여 죄목을 만드는 식으로 입법이 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죄목을 마구 만들어내는 것은 그 자체로도 국민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이런 일을 자유주의적 법치국가가 해서는 안 된다. 인도에서는 이른바 '테러분열법'을 내세워 과거 10년간 7만5천명의 테러용의자를 체포했다. 그런데 체포한 테러용의자 가운데 1%도 채 안되는 사람들만이 정식으로 기소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정치적 소수자들의 위법행위 혹은 그에 미치지 않는 가벼운 범법행위도 테러행위로 체포되고 수사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던가. 한국에서도 이 같은 일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우려한다. 사법경찰권을 가진 대테러센터공무원(국정원직원)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테러'분자로 몰려 체포되고 수사를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집회, 시위권 등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은 대단히 위축될 것이다. 이런 일이 뻔히 예측되는 데도 테러방지법을 서둘러 제정하려는 국정원의 의도는 무엇인가? 우리는 정부가 이 부분

에 대해 당당히 밝히기를 요구한다.

정부는 현행 형법 및 특별형법 중 테러행위에 대처할 수 있는 '죄목'을 차근차근 점검해 보고, 그래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범죄행위로 규율하는 식으로 입법절차를 진행 하라는 시민인권운동단체들의 주장을 경청해야 한다. 아니 그 이전에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테러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반론에 귀 기울일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월드컵을 앞두고 시간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면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시민인권운동세력이 책임질거나 하는 식으로 국민들을 몰아 부쳐서는 안 된다. 정부가 입안한 테러방지법이 실제로 테러를 방지하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생활을 가져다 줄 것인가 아니면 테러방지라는 명분아래 국민의 자유를 한층 더 제한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는 정부에게 있다. 다시 말해 안전을 강화한다는 이유로 자유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의무, 입증책임이 있다는 얘기이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한다. 그리고 바로 그 답변 위에서 차근차근 테러대책을 세워나갈 것을 염중히 촉구한다.

2001년 11월 30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성명]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될 테러방지법의 제정은 결코 허용될 수 없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이를 이번 정기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국가정보원이 이날 발표한 테러방지법(안)은 그 법규정의 애매모호성과 반인권성으로 하여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될 소지가 다분한 법안으로서 각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우선 테러방지법(안)에서는 '테러'를 '정치적·종교적·이념적·민족적·사회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을 추구하거나 그 주의·주장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계획적으로 행하는 불법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애매모호할 뿐 아니라 불법행위에는 국가중요시설이나 주한 외국정부 시설의 점거가 포함되어 있어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행위나 정치적 시위행위조차도 테러로 규정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테러방지법(안)에는 '허위신고의 처벌', '불고지죄', '구속기간의 연장'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한 법안이다. 특히 '불고지죄'는 그것의 반인륜성으로 하여 이미 국가보안법에서 조차도 사문화되어 버린 지 오래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에서는 그것의 부활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 그들의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대테러대책회의의 상임위원장은 국정원장이 말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정보원내에 대테러센타를 두고 의장은 국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어 결국 법안의 기안자인 국가정보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켜 놓았다.

또한 대테러센타에 테러사건에 대한 수사권마저 부여함으로써 그간 인권시비에 술하게 휘말렸던 국가정보원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받게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우리나라에서 실질적인 테러의 위협이 있는 것도 아니며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테러행위를 규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무리하게 테러방지법을 제정하려는 진정한 의도는 어디에 있는가. 이것은 결국 테러방지법의 입법의도 자체가 보수언론들에 의해 이식된 국민들의 테러공포심을 악용하여 무너져가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국가정보원의 흉계로밖에 생각할 수 없게 한다.

과거 국가정보원(구 안기부)이 나서서 수사한 테러사건 중에 그 진상이 명쾌하게 국민들에게 공개된 것이 하나라도 있었던가. KAL기 폭파사건 하나만 보더라도 술한 의혹만을 남겨 놓은 채 사건이 종결되어 아직도 그것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제 2의 국가보안법이 되어 우리 민중들의 삶을 옥죄어올 테러방지법의 제정을 반대하며 국가정보원은 자신들의 권한을 확대할 흉계만을 꾸밀 것이 아니라 자진해체할 것을 권고하는 바이다.

2001년 11월 21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